

2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종류]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legal ground 법적근거	 Payroll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제2조 [급여제공방법(구입,대여)]

구입방식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급여품목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품 목 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